

「고등교육 규제특례(안)」 의견수렴 안내

「고등교육법」 제59조의10~제59조의12 및 같은법 시행령 제71조의11~제71조의 13에 따라 고등교육 규제특례 신청을 위하여 「고등교육 규제특례(안)」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고, 의견수렴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기관은 기간 내에 의견서(붙임 서식)를 작성하여 전달기관인 부산앵커센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8일

1 사업 개요

1-1. 고등교육 규제특례 개요

- (규제특례) 「고등교육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59조의10제7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부여하는 것으로서, 학교의 발전과 법 제59조의2에 따른 시책의 추진 등에 필요한 범위에서 관계 법령에서 정한 규제를 완화·배제하는 등의 조치
- (적용기간) 4년 이내(연장가능, 4년+2년+2년(법령 미개정시)으로 최대 8년)
- (특례 미적용 대상) 「고등교육 규제특례 운영에 관한 고시」 제3조제2항 참고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① 현행 법령에 따른 규제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새로운 제도·자격 또는 권한의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사항② 학칙 등 학교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 또는 학교 내부의 규정·지침에 관한 사항③ 규제특례로 인하여 학생의 재정부담이 증가하거나 학생의 공정한 교육기회 또는 안전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④ 규제특례로 인하여 수반되는 재정투자의 규모가 과도한 사항⑤ 재정지원사업(해당 사업의 선정을 위하여 대학이 제출한 계획에 포함된 사항을 포함한다), 재정진단, 기관평가인증 등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규제특례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사항 |
|--|

- (적용기관) 고등교육기관(고등교육법 제2조)
- (신청·부여 규모) 고등교육 규제특례 신청 규모를 사전에 정하지 않고, 대학·지역 동반성장 지원위원회(교육부장관 소속) 심의·의결 이후 규제특례 부여

1-2. 부산 고등교육 규제특례 신청

- (근거) 「고등교육법」 제59조의10~제59조의12, 같은법 시행령 제71조의11~제71조의13, 「고등교육법 규제특례 운영에 관한 고시(교육부 고시 제2026-17호)」
- (신청주체)* 부산광역시장
 -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특성화 지방대학(글로벌대학)의 장은 해당 대학 단위로 별도 신청
- (전담기관) 부산앵커센터
- (신청대학) 국립부경대학교, 국립한국해양대학교, 동의대학교, 신라대학교, 동의과학대학교, 부산과학기술대학교, 부산보건대학교, 부산여자대학교

2 규제 특례 신청사항

2-1. 개요

연번	규제특례 신청 사항	특례 분야	규제특례 주요 내용	신청 대학
1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제30조제5항제3호 표준 현장실습지원비 지원을 한도 상향	학사운영 (표준현장실습)	표준 현장실습지원비 지원을 한도 상향 (지원을 상향: 25%→50%)	국립부경대학교 국립한국해양대학교 동의대학교 신라대학교 부산과학기술대학교 부산보건대학교 부산여자대학교
2	「고등교육법」제17조, 제14조2,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11 비전임교원 공개채용 예외 적용	대학경영 (교원인사)	비전임교원 공개채용 예외 적용 (적용범위: 특수목적 교육·연구, 첨단분야, 산학협력, 지역혁신사업 등)	국립부경대학교 국립한국해양대학교
3	「고등교육법」제17조, 제14조2 「교육공무원법」제47조 제1항 비전임교원 장년 기준(65세) 예외 적용	대학경영 (교원인사)	비전임교원 장년(65세) 예외 적용 (적용범위: 대학별 별도 범위 지정)	국립부경대학교 국립한국해양대학교
4	「교육공무원법」제27조, 「국립학교설치령」제5조의2 국립대학 주요 보직에 외부 인사의 임용	대학경영 (교원인사)	국립대학 주요 보직에 외부 인사 임명 허용 (적용범위: 부총장)	국립한국해양대학교
5	「고등교육법」 제32조 및 제50조의4, 동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및 별표 1 ‘정원관리 기준’ 전문기술석사과정 외국인 유 학생 정원 외 입학 허용	학사 운영 (입학정원)	전문기술석사과정 외국인 유 학생 정원 외 입학 허용	동의과학대학교

2-2. 규제특례 신청내용

1) 표준 현장실습지원비 지원을 한도 상향

○ 규제 현황

-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교육부고시)제30조제5항제3호 기반의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시, 각 정부 부처 등의 지원비(이하 “국고 및 지방비”라 한다) 지급 기준을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른 월 환산액 기준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 적용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규정」 제30조(지도·감독 등)

-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각 정부부처 등”이라 한다)은 산학협력법 제11조의3제1항·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지켜 현장실습 계획을 세운다.

3. 제1호에 따른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를 실시할 경우 각 정부부처 등에서는 지원비(이하 ‘국고 및 지방비’) 지급 시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른 월 환산액 기준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25를 표준화된 지급 수준으로 한다.

○ 규제특례 필요성

- 표준 현장실습 참여 기업의 재정 부담 완화를 통한 참여 기업·학생 확대 및 양질의 실습 기회 제공을 위한 정부 부처 등의 표준 현장실습비 지원을 한도 상향 조정 필요

○ 규제특례 요청사항

-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교육부고시)제30조제5항제3호에 규정된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실습지원비의 정부 부처 등 재정지원 비율 한도를 현행 ‘100분의 25’에서 ‘100분의 50’으로 상향 조정 요청

○ 규제특례 신청대학

연번	신청대학	적용범위(대상·학과)	적용기간
1	국립부경대학교	- 정부·지자체가 지정,관리하는 산업체 또는 공공기관·출연연기관 등	- '27.1.1. ~ '30.12.31. (4년)
2	국립한국해양대학교	-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14개 학부(31개 전공) 12학과	- '27.3.1. ~ '31.2.28. (4년)
3	동의대학교	- 동의대학교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참여 실습기관 전체 - 부산·울산·경남 지역기업 및 학생 전공연계 기업	- '27.1.1. ~ '30.12.31. (4년)
4	신라대학교	- 현장실습 적용제외 학과를 제외한 전 학과(부))	- '27.1.1. ~ '30.2.28. (3.2년)
5	부산과학기술대학교	-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대상 전 학과	- '27.1.1. ~ '30.12.31. (4년)

연번	신청대학	적용범위(대상·학과)	적용기간
6	부산보건대학교	- 10개 계열·학과: 광고콘텐츠 디자인과, 호텔바리스타과, 항공관광과, 글로벌뷰티계열, 스포츠재활과, 디저트&서양조리과, 호텔제과제빵과, 반려동물보건과, 실용음악과, 특수재활과	- '27.6.21. ~ '31.6.20. (4년)
7	부산여자대학교	- 4개 학과: 바리스타&카페창업과, 호텔외식조리과, 호텔제과제빵과, 미용과	- '27.7.1. ~ '31.6.30. (4년)

○ 기대효과

- 실습비 지원 확대를 통한 중소·중견기업의 참여 유인을 제고하고, 대학별 학과 특성에 부합하는 다양한 실습처를 확보함으로써 표준 현장실습의 정성·정량적 운영 성과 제고

2) 비전임교원 공개채용 예외 적용

○ 규제 현황

- 「고등교육법」제17조, 제14조의2, 동법 시행령 제4조의11에 의거, 비전임교원(겸임교원)채용 시 자격 기준을 충족자를 대상으로 객관적·공정한 심사를 거친 공개 채용 원칙 적용

「고등교육법」

제17조(겸임교원 등)

- ① 학교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4조제2항의 교원 외에 명예교수·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을 두어 교육이나 연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 ②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이하 “겸임교원등”이라 한다)에게는 제14조의2제1항·제2항(「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4제7항 및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제9항은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강사”는 “겸임교원등”으로 본다. (후단 생략)

제14조의2(강사)

- ① 제14조제2항에 따른 강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용기준과 절차, 교수시간에 따라 임용기간, 임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근무조건을 정하여 서면계약으로 임용하며, 임용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미만으로 임용할 수 있다. (후단 생략)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의11(강사의 임용기준과 절차 등)

- ①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강사를 임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용기준과 절차에 따른다.
 1. 법 제16조 및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강사의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 공개 임용할 것 (후단 생략)

○ 규제특례 필요성

- 지역혁신산업 및 첨단 신산업 분야의 교육·연구와 산학협력 활성화를 도모하고, 특수목적의 교육·연구 수행 및 특정 학문분야의 우수 인력을 적시에 확보하기 위한 비전임교원 공개채용 예외 적용 필요

○ 규제특례 요청사항

- 「고등교육법」 제17조, 제14조의2, 동법 시행령 제4조의11에 규정된 규정된 비전임교원 채용 시, 대학 학칙 및 교원 인사 규정을 정비하고 공개채용 예외 적용 요건, 임용 절차, 심의 기준 및 사후관리 절차 등을 별도로 마련하여 비전임교원 공개채용 예외 적용 허용 요청

○ 규제특례 신청대학

연번	신청대학	적용범위(대상·학과)	적용기간
1	국립부경대학교	- 특수 목적 교육·연구, 첨단분야 산학협력, 지역혁신사업 수행 업무 관련 비전임교원 임용	- '27.1.1. ~ '30.12.31. (4년)
2	국립한국해양대학교	- 학과 및 부서 추천 기반의 특별 채용 트랙을 신설하여 비전임 교원 임용	- '27.3.1. ~ '31.2.28. (4년)

○ 기대효과

- 유연한 비전임교원 채용 체계를 통한 첨단·신산업 분야 우수 석학 및 전문가의 적기 확보로 대학의 교육·연구 경쟁력을 제고하고, 산학 공동 연구와 현장 중심 교육 활성화를 기반으로 한 지역 산업 문제 해결 및 지역 혁신 생태계 조성

3) 비전임교원 정년 기준(65세) 예외 적용

○ 규제 현황

- 「고등교육법」 제17조, 제14조의2 및 「교육공무원법」 제47조 제1항에 의거, 비전임교원(겸임교원)도 전임교원과 동일하게 정년기준을 65세로 규정

「고등교육법」

제17조(겸임교원 등)

- ① 학교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4조제2항의 교원 외에 명예교수·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을 두어 교육이나 연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 ②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이하 “겸임교원등”이라 한다)에게는 제14조의2제1항·제2항(「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4제7항 및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제9항은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강사”는 “겸임교원등”으로 본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겸임교원등을 1년 미만으로 임용할 수 있다.
 1. 학교 외의 기관에서 발주하는 1년 미만의 연구 또는 산학협력에의 참여를 위하여 겸임교원등을 임용하는 경우
 2. 교육과정 또는 수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 및 공립학교는 제외한다)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사람을 겸임교원등으로 임용하는 경우

제14조의2(강사)

- ① 제14조제2항에 따른 강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용기준과 절차, 교수시간에 따라 임용기간, 임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근무조건을 정하여 서면계약으로

임용하며, 임용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1년 미만으로 임용할 수 있다.

(후단 생략)

「교육공무원법」

제47조(정년)

- ①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2세로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교원인 교육 공무원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 ② 교육공무원(임기가 있는 교육공무원을 포함한다)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3월에서 8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8월 31일에, 9월에서 다음 해 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해 2월 말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 규제특례 필요성

- 풍부한 현장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시니어 전문가들이 퇴직 후 대학 교육 및 연구 현장으로 유입되지 못하고 단절되는 현상을 방지하고, 산업체 · 연구원 · 국내외석학 등이 유입될 수 있는 채용 제도의 유연성 필요

○ 규제특례 요청사항

- 「고등교육법」 제17조, 제14조의2, 「교육공무원법」 제47조 제1항에 규정된, 비전임교원(겸임교원)의 정년 연장을 위해 정년 예외 적용 대상 연장 검증 및 자격 요건을 구체화 하는 등 규정을 마련하여 비전임교원에 대한 정년 기준(65세) 예외 적용 요청

○ 규제특례 신청대학

연번	신청대학	적용범위(대상 · 학과)	적용기간
1	국립부경대학교	- 특수 목적 교육 · 연구, 첨단분야, 산학협력, 지역혁신사업 수행 업무 관련 비전임교원 임용	- '27.1.1. ~ '30.12.31. (4년)
2	국립한국해양대학교	- 검증된 인사에 한하여 정년 기준 예외 적용	- '27.3.1. ~ '31.2.28. (4년)

○ 기대효과

- 특성화 분야(해양 · 첨단산업 등)의 실무 경험과 교육 · 연구 역량을 갖춘 시니어 전문 인력을 비전임교원으로 채용하여 학생들에게 우수한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석학의 수십 년간 축적된 연구 성과와 학문적 네트워크를 후속 세대에 전수하는 기회 부여

4) 국립대학 주요 보직에 외부 인사의 임용

○ 규제 현황

- 「교육공무원법」 제27조 제1항 및 「국립학교설치령」 제5조의2에 의거, 국립대학의 부총장은 교수 중에서만 총장의 제청으로 교육부장관이 임명하도록 규정

「교육공무원법」

제27조(부총장·대학원장·단과대학장의 보직)

① 부총장은 교수 중에서, 대학원장·단과대학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대학의 장의 제청으로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② 대학의 장이 교육공무원을 제1항에 따라 임명할 것을 제청할 때에는 해당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국립학교 설치령」

제5조의2(부총장)

① 대학 및 교육대학에 총장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해당 대학 및 교육대학의 교수 중에서 부총장을 둘 수 있다.

② 부총장은 대학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학사 등 일부의 권한에 대하여 총장의 위임을 받아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③ 부총장은 총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규제특례 필요성

- 국립 대학 주요 보직(부총장)의 임용 자격 완화를 통해, 실무 경험과 전문 역량을 갖춘 우수한 외부 인사를 적극 임용함으로써 대학 혁신 과제를 선도적이고 진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인사 운영 체계의 다변화 필요

○ 규제특례 요청사항

- 「교육공무원법」 제27조 제1항 및 「국립학교설치령」 제5조의2에 규정된, 국립 대학 주요 보직의 임용 자격 요건을 완화하여, 내부 교원뿐만 아니라 외부 전문가(산업계, 연구기관, 해외 석학 등) 등 외부 인사까지 임명할 수 있도록 주요 보직 임용 대상의 범위 확대 및 예외 적용 허용 요청

○ 규제특례 신청대학

연번	신청대학	적용범위(대상·학과)	적용기간
1	국립한국해양대학교	- 국립한국해양대학교 부총장 외부 인사 임명	- '27.3.1. ~ '31.2.28. (4년)

○ 기대효과

- 개방형 인사제도 기반의 지자체 및 해양클러스터 주요 인사 임용과 인적·물적 자원 공유를 통해 통합적 협력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대학 혁신 사업 성과를 극대화하고 ‘AI 기반 해양산업 대전환’을 선도하는 ‘해양 특성화 플랫폼 대학’ 구축

5) 전문기술석사과정 외국인 유학생 정원 외 입학 허용

○ 규제 현황

- 「고등교육법」 제49조의2 및 제50조의4에 따라 전문기술석사과정의 운영 및 학위 수여가 가능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대학의 학생 정원과 입학자격이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및 별표 1에 따라 재외국민과 외국인 등의 정원 외 특별전형 기준 제시
- 반면, 전문대학의 전문기술석사과정은 외국인 유학생이 정원 외 입학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인가된 정원 내에서만 선발해야 하는 제도적 제약 발생

「고등교육법」

제49조의2(전문기술석사과정) 고숙련 기술 전문가의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대학에 전문기술석사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50조의4(전문기술석사과정에 대한 학위수여)

- ① 제49조의2에 따른 전문기술석사과정에 입학하여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는 전문기술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전문기술석사학위가 수여되는 전문기술석사과정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전문기술석사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관련 분야에 재직할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 ④ 교육부장관은 제2항의 인가를 위한 평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이나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⑤ 제1항에 따른 전문기술석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석사학위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본다.

제32조(학생의 정원)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원격대학·기술대학 및 각종 학교를 포함한다)의 학생 정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제33조(입학자격) ①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및 원격대학을 포함하며,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

- ② 학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자격이 있거나 해당 대학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으로 한다.
- ③ 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

- ④ 대학원의 박사학위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입학·편입학 등)

- ①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원격대학 및 각종학교를 포함하되, 대학원 및 대학원대학을 제외한다)의 장은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학과등 간의 정원 조정이 필요한 경우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입학정원을 조정할 모집인원의 범위에서 입학(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허가해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사람의 입학의 경우에는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2호·제3호·제8호·제9호·제11호·제12호·제13호 또는 제14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총학생수는 별표 1의 기준을 따른다

- 규제특례 필요성
 - 학칙 개정만으로는 법령상 정원 외 선발 범위를 명확하게 적용하고 확대 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현재 법령상 전문기술석사과정에 대해 일반대학 대학원 수준의 정원 외 선발 기준을 한시적으로 적용하여 글로벌 인재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 필요
- 규제특례 요청사항
 - 전문대학의 전문기술석사과정에 입학하는 외국인 중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인가정원과 별도의 정원으로 인정해 줄 것을 요청
- 규제특례 신청대학

연번	신청대학	적용범위(대상·학과)	적용기간
1	동의과학대학교	- 전문기술석사과정	- '27.3.1. ~ '31.2.28. (4년)

- 기대효과
 - 전문대학의 고숙련 직업교육을 국제화하여 글로벌 직업교육 모델을 구축 하고 내국인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지역 산업에 필요한 외국인 기술 인재를 선발함으로써 일반대학원과 전문기술석사과정 간의 제도적 형평성 제고

3 의견제출 안내

- (제출방법)
 - 방 법: 우편 또는 이메일
 - 주 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0(국민연금공단 부산지역본부) 2층, 부산앵커센터
 - 이메일 주소: smjeong1@brise.re.kr
- (제출기한) 2026. 9. 8.(화) ~ 9. 11.(금), (4일간)
- (문 의 처) 부산라이즈혁신원 황다솔 선임연구원 (051-795-5142)

고등교육 규제특례(안) 신청에 대한 의견서

☐ 제 출 자

- 성 명(단체명) :
- 생년월일(법인번호) :
- 연 락 처 :

☐ 의견 사항

대상 규제 특례:

상기 본인은 「고등교육법」 제59조의10~제59조의12, 동법 시행령 제71조의11~제71조의13에 근거한 「고등교육 규제특례」(안) 신청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 9. .

의견제출자 :

(서명)

부산앵커센터장 귀하